

보도시점 2026. 5. 29.(금) 15:00 / 배포 2026. 5. 29.(금) 08:30

# 일본 하도급법 동향과 전면 개정에 대한 고찰 관련 국제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사)한국하도급법학회 공동개최-

## < 행사 개요 >

- 일 시 : 2026. 5. 29.(금) 13:40~18:00
- 장 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
- 후 원 : 공정거래위원회
- 주 제 : **일본 하도급법 동향과 전면 개정에 대한 고찰**
  - [발표1] 일본 하도급법의 역할과 발전
  - [발표2] 일본 하도급법의 최근 집행 동향 및 사례
  - [발표3] 일본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 [발표4] 일본 하도급법 개정과 한국 하도급법 비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 이하 ‘조정원’)은 (사)한국하도급법학회(학회장 정진명, 이하 ‘하도급법학회’)와 함께 ‘**일본 하도급법 동향과 전면 개정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조정원과 하도급법학회는 하도급 분야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이어 왔으며,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일본의 학계 및 실무가들을 초청하여 최근 대폭 개정된 **일본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동향**을 논의하였다.

정진명 학회장(하도급법학회)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일본 하도급법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하도급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동일 부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은 축사를 통해 "오늘날 하도급법은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넘어, 공급망 전체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오늘 학술대회에서 이루어질 비교법적 논의와

다양한 제언은 앞으로 우리 하도급 정책과 제도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는 네 가지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각 발표마다 2명의 토론자가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로, Uemura Yoshiteru(Hannan University)는 ‘일본 하도급법의 역할과 발전’을 주제로, 일본 하도급법의 제정 배경과 이후 주요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그 발전 과정을 설명하였다.

두 번째로, Fujitani Yoshihide(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일본 하도급법의 최근 집행 동향 및 사례’를 주제로, 최근 일본의 하도급법 집행 현황과 함께 지급 대금 감액,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제공 요구 등 주요 위반 사례를 소개하였다.

세 번째로, Tachiwada Yukiko(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일본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을 주제로, 일방적인 가격 결정 금지, 어음 지급 금지, 운송서비스 적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제조위탁 등에 관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지연 등의 방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동원 교수(충북대 법전문)는 ‘일본 하도급법 개정과 한국 하도급법 비교’를 주제로, 최근 일본 하도급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양국 제도의 차이와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정기 조정원장은 “학계 및 전문가들과의 활발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국제적인 학술 연구와 발전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앞으로도 학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연구 성과를 적극 공유·확산하면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일반현황  
 2. 학술대회 세부 프로그램  
 3. 한국하도급법학회장 개회사  
 4.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5.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축사  
 6. 일본 하도급법 전면 개정 주요 내용(참고)

담당 부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책임자	팀 장	정한진 (02-6363-9154)
	공정거래연구센터 연구행정팀	담당자	대 리	문소영 (02-6363-9156)



## 1. 설립목적

- 분쟁조정 업무를 통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자를 신속히 구제해주고자 2007년 설립

※ 설립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 2. 주요 업무

-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기업자 피해구제
  - 일반불공정거래·가맹·하도급 등 6개 분야 사업자 간 분쟁조정
    - ※ 2025년 4,726건 접수 및 4,407건 처리, 2024년 4,041건 접수 및 3,840건 처리
-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운영
  - 사업자 대상 불공정거래 관련 상담, 교육, 법률조력 등 사업자 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 업무 수행
- 공정거래 문화확산 업무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공정거래 분야 협약이행 평가, 하도급대금 연동확산지원본부, 동의의결 및 시정조치 이행관리
- 공정거래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 시장분석 및 사업자 거래행태 분석, 공정거래 제도와 정책연구, 경쟁 촉진을 위한 경쟁영향평가 수행 등

## 3. 예산 및 조직 규모(2026년 기준)

- 예산액: 16,583백만 원
- 정원: 125명
- 조직: 4실 1센터 16팀

## 붙임2

## 학술대회 세부 프로그램

- 대주제 : 일본 하도급법 동향과 전면 개정에 대한 고찰
- 일 시 : 2026년 5월 29일(금) 13시 40분 ~ 18시
- 장 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대한상공회의소 8층)
- 주 최 : (사)한국하도급법학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후 원 : 공정거래위원회

전체사회 13:40	정신동 교수 (한국외대 법전문)			
개 회 사 13:40-13:45	정진명 회장 (한국하도급법학회, 단국대 교수)			
축 사 13:45-13:55	남동일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 김정기 원장(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기념촬영 13:55-14:00	전체 참석자			
	주 제	발 제	좌 장	토 론
발제1 14:00-14:50 (50분)	일본 하도급법의 역할과 발전	Uemura Yoshiteru (Hannan University)	서희석 교수 (부산대 법전문)	정신동 교수 (한국외대 법전문)
				박광동 선임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발제2 14:50-15:40 (50분)	일본 하도급법의 최근 집행 동향 및 사례	Fujitani Yoshihid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김종길 교수 (국립 금오공대)
				김건식 연구위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유 토론 및 중간 휴식				
발제3 16:00-16:50 (50분)	일본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Tachiwada Yukiko (Japan Fair Trade Commission)	조성국 교수 (중앙대 법전문)	고철웅 교수 (한남대 법학부)
				장 품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발제4 16:50-17:40 (50분)	일본 하도급법 개정과 한국 하도급법 비교	이동원 교수 (충북대 법전문)		김민지 과장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고형석 교수 (한국해양대 법학부)
폐 회				

※ 발제문 및 발표는 영어로 진행되며, 토론문 발표는 한국어로 진행하되 토론 답변 등에 통역이 지원될 예정입니다.(통역: 고철웅 교수(한남대 법학과))

안녕하십니까.

한국하도급법학회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동으로 춘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학술대회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 및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정부 부처 및 법조계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멀리 일본에서 귀한 걸음을 해주신 발표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일본 하도급법 동향과 전면 개정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일본 하도급법의 최근 개정 동향과 분쟁 해결 체제 개선에 대한 사항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급격한 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하고 상생 가능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공유하며,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법적·경제적 과제들을 함께 고민해 온 오랜 파트너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학술대회가 다루는 네 가지 주제는 양국의 하도급법 제도를 거울삼아 우리 법제가 나아갈 미래를 조망하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제1주제와 제3주제를 통해 일본 하도급법의 도입 및 제정 배경, 그리고 그간의 역할을 되짚어보는 것은 우리 하도급법의 뿌리와 지향점을 다시금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2주제에서 다루어질 일본의 하도급법 최근 집행 동향과 구체적인 사례들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하도급법 집행의 지혜를 전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4주제인 일본 하도급법 개정과 한국 하도급법의 비교 연구는 일본의 하도급법 전면 개정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우리 하도급법의 발전적 보완 방향을 모색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법은 고정된 틀이 아니라 시대를 반영하며 호흡하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오늘 양국의 전문가 여러분께서 나누실 심도 있는 논의와 해안은 단순히 학술적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하도급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며, 대·중소기업 간 균형 있는 상생 협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는 실천적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하도급거래 분야에서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하도급법학회가 처음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발제를 맡아 주신 일본의 발제자 여러분 및 이에 대해 사회와 토론을 맡아 주신 국내 학계의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29일

한국하도급법학회장

정진명

**◇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입니다.

먼저 오늘 뜻깊은 학술대회를 마련해주신  
한국하도급법학회 정진명 학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발표와 토론을 위해 참석해주신  
모든 전문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일본 하도급법 동향과 전면 개정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일본 하도급법의 역할과 발전,  
최근 집행 동향과 개정 방향,  
그리고 한국 하도급법과의 비교를  
폭넓게 논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 한국과 일본 하도급법의 역사**

대한민국과 일본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분업체제를 기반으로  
하도급 거래 질서가 발전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양국의 하도급법 역시,  
공정거래법상 규율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거래상 지위 남용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유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의 하도급법은 시대 변화에 따라  
규율 대상과 역할도 점차 확대되어 왔습니다.

서면 발급 등 거래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부터  
대금 미지급이나 부당 반품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규율까지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해 왔고,

나아가 오늘날 하도급법은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넘어,  
공급망 전체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 한국과 일본 하도급법의 동향과 과제

특히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물류비 증가 등  
급격한 비용 상승 측면에서 나타나는  
거래관행에 대한 대응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매우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23년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을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최근에는 에너지비용까지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일본 역시 협의 없는 원사업자의 일방적 가격결정 및  
비용전가 관행을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와의 성실한 가격 협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법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현실적인 비용 상승 부담이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통된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기업 간 거래조건의 문제를 넘어서,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나아가 산업 경쟁력 확보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맺음말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학술대회에서 이루어질  
비교법적 논의와 다양한 제언은  
앞으로 한국 하도급 정책과 제도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변화하는 거래환경에 맞추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현장과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학술대회가 학계와 실무, 정책 당국 간 활발한 소통과  
발전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행사를 준비해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부위원장님,  
 한국하도급법학회 정진명 학회장님,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일본에서 직접 참석해 주신  
 학계 및 실무가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리적으로 이웃한 한국과 일본은  
 법과 제도 전반에 걸쳐  
 오랜 기간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아 왔습니다.

특히 하도급 분야에서  
 일본은 1956년 하도급법을 제정하였고,  
 우리나라는 1984년 하도급법을 제정하면서  
 일본의 제도와 경험을 중요한 운영 모델로 삼아 왔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은 지난해  
 약 70년 만에 하도급법을 전면 개정하여  
 법률명까지 변경하는 등 큰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일본 하도급법의 역할과 집행 현황,  
그리고 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조정원은 하도급 분야에서  
최근 거의 매년 1천 건 이상의 분쟁을 조정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하도급법 제도의 변화와 법 집행,  
그리고 분쟁조정 사례 역시 일본의 제도 발전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세미나는 한일 양국이  
서로 배우고 함께 발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하도급법학회와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의 가교 역할을 하시며  
제1발제를 맡아주신 우에무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에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오셔서  
발표를 맡아주신 후지타니, 다치와다 국과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정성껏 준비해 주신  
한국하도금법학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뜻깊은 학술행사를 후원해 주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원은 앞으로도  
하도금법의 발전을 위한 학술행사와 연구 교류에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번 국제 공동학술대회가  
하도금 분야에 대한 한일 양국 간의  
깊이 있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지속적인 국제 교류를 이어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본은 1956년 제정된 하도급법(「하도급대금 지급지연 등 방지법」)을 2025년 전면 개정하여 202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크게 5가지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의 제목과 용어를 변경하였다. 그동안 사용하였던 ‘하청’이라는 용어가 기업 간 차별적 상하관계를 내포한다는 지적에 따라 ‘하청사업자’를 ‘중소수탁사업자’로, 원사업자를 ‘위탁사업자’로 변경하고, 법의 제목도 「제조위탁 등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지연 등의 방지법」으로 변경하였다.

둘째, 대금 결정 과정의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탁사업자가 적절한 협상 없이 가격을 동결하거나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거래대금의 현금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약속어음 지급을 금지하였다.

셋째,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 적용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종래 자본금 기준(3억 엔)에 종업원 기준(300인 또는 업종별 100인)을 추가하였다.

넷째, 운송·물류 위탁 분야도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였다. 즉, 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 등의 보호를 위해 ‘제조위탁 등’의 범위에 ‘특정 운송위탁’을 포함하는 개념을 신설하였다.

다섯째,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보복조치 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자가 공정거래 위원회 및 중소기업청 외에도 관련 행정기관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